##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재원·이해민·김준형

조 국・신장식・한정애

강경숙 · 황운하 · 조승래

정준호 · 서영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,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,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,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「방송법」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,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인 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어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어 일 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

재한 정부기관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 써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과태료)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7조(과태료) ① 제9조를 위반
	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
	과태료를 부과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·징
	<u>수한다.</u>